

●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-07호

「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2월 27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「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등 관련 규정 개정(‘25.8.7.)에 따라 재정의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순서에 맞춘 재배열 및 정의 추가 등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내용 반영 및 작성자 혼동 방지를 위한 재정의
- 나. 고시 적용 범위 명확화
- 다. 작성 제출 대상 합리화를 위한 작성 면제시설 확대
- 라. 타법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 신설
- 마. 기타 문구 정비

3. 의견제출

「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(참조: 사고예방심사2과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개정(안) 전문은 ‘화학물질안전원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)

다. 기타 필요사항(참고자료)

라. 보내실 곳: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

○ 메일: jeongmin11@korea.kr

○ 전화: 043-830-4324

※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<http://nics.me.go.kr>)